

## □ 2023년 일반감사 결과

### 1. 총괄

총 처분 요구	처분 종류							재정상 조치금액 (원)	신분상 조치사항 (명)
	징계	시정	주의	권고	통보	개선	현지 조치		
11	1	2	3	2	2	1	-	19,325,901	징계 1명 주의 2명

※ 시정: 회수 1, 기타 1

### 2.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

연번	제목	주요지적사항	조치요구내용
1	연구관리팀의 잔고계정 보유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관리팀 잔고계정은 「연구사업 관리규정」의 잔고계정 요건(목적, 계정책임자, 자원 등)에 부합하지 않음</li> <li>연구관리팀 잔고계정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 및 집행근거 부재</li> <li>시행 근거 없이 연구관리팀장 전 결로 신규계정 생성 및 잔액 이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관리팀의 잔고계정(K10730) 잔액 151,094,645원을 전액 기관 수입으로 처리</li> <li>관련자 주의 조치</li> </ul>
2	미수금 처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료된 연구사업 2건에서 발생한 미수금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연구관리팀 잔고계정 재원으로 미수금을 충당</li> <li>연구관리팀 잔고계정 사용 시 「위임전결규정」 및 「연구사업관리규정」을 따르지 않고 연구관리팀장 전결로 처리</li> <li>「연구사업관리규정」에 따라 산업체 연구과제는 연구비 수령 전에 우리원 자금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미리 집행할 수 없음에도 위탁연구개발사업 협약서에 이에 반하는 조항 삽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수금 총당에 사용된 15,148,973원을 다시 연구관리팀 잔고계정(K10730)으로 복원</li> <li>미수금 15,148,973원의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</li> <li>산업체 연구과제에서 연구비 기성 청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</li> <li>관련자 주의 조치</li> </ul>

연번	제목	주요지적사항	조치요구내용
3	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처분요구에 따라 총장이 교수 A의 연구비 부담집행액 4,176,928원을 환수하여 기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환수금을 연구관리팀 잔고계정으로 수입 처리</li> <li>• 계정책임자인 연구관리팀장의 권한으로 A가 본인이 납부한 기관 환수금을 연구관리팀 잔고계정에서 전액 사용하도록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A가 사용한 4,176,928원을 환수하여 기관 수입으로 처리</li> <li>▶ 관련자 징계(경징계) 처분</li> </ul>
4	계약기간 연장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연장 (2건)</li> <li>•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기간 연장 (4건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약연장 신청을 접수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</li> <li>▶ 관련자 주의 조치</li> </ul>
5	고정자산 처분 관련 기준 개정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천만원 이상 장비 25개를 이사회 의 승인 없이 처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현행 업무 방식과 규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 처분 관련 기준 보완</li> </ul>
6	직원인사위원회 안건 상정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원인사위원회 안건에 「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」에 따른 “연구인력”의 정의를 모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탄력적 적용 기준의 대상과 수집 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직원인사위원회에 “연구인력”의 정의를 모두 공개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 탄력적 적용 기준의 대상과 수집 정보의 범위를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</li> </ul>